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대한 마을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 유도 및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규정 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마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현재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청년층을 비롯한 생산가능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면서 농촌 지역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약화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충북도의 경우 전체 11개 시군 중 단양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북도는 청주 등 도시로의 사회적 유출 또한 진행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대상 인구유입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귀농어·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에 따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그간 마을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고착된 마을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귀농어·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적응에 실패하거나, 귀농어·귀촌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귀농어·귀촌 희망자·원주민 간 갈등과 분쟁 소지인 마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어·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마을발전기금 분쟁 관련 언론 보도 >

▶ KBS (2023.02.15.), “마을발전기금이 뭐길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 '마을발전기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마을발전기금 납입을 두고 벌어졌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분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 같은 마을 안에서 '주소 이전'만 했는데...마을발전기금을 내라?

■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도 못 받아...투명인간 취급"

권 씨는 이후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자신이 마을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마을 총회 참석은 거부됐고, 이장 선거권도 박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을 단체 카톡방에도 참여할 수 없어 단순 일정 확인 등 마을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의 경우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위임조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서 불필요한 법령 인용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의 경우 안 제1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 상위법령 삭제로 약칭된 조문이 처음 나오는 용어가 됨에 따라 약칭하지 않고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마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해 정의규정에 ‘마을공동체’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보여짐
- 안 제4조의 경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귀농어업·귀촌인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책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의 경우 귀농어업·귀촌인에 대한 사업 지원 사항과 마

을공동체에 마을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여짐

- 안 제14조는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대비하여 이를 취소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15조의 경우 시행규칙의 제정은 도지사 고유 권한으로 조례에 따라 강제할 수 없어 실익이 없는 규정임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4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마을공동체에게 마을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마을 지원금 지급의 대상·방법·범위 등 역시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 대상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약한 마을
 - 방법 : 마을 지원금 지원
 - 범위 :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라. 종합의견

- (필요성) 귀농어·귀촌 시 마을발전기금 징수로 귀농어업·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적응 실패 및 귀농어·귀촌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지원금을 지급하여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타당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마을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 역시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귀농어업·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 요인인 마을발전기금 문제를 해소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여짐 또한 필요성, 타당성, 법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다만, 마을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